지식재산 전략과 CEO[1)]

윤 선 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처음에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과 기업의 운영에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와 시장까지도 급변화를 시켰다.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다른 국가 또는 기업들보다 빨리 그 변화에 대처하여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의 일례로 미국과 일본의 사례들을 들 수 있다. 일찍이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제품의 수출로서 국제 경쟁력이 없다는 인식하에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걸쳐 국제경쟁력을 되찾기 위하여 1979년 레이건 대통령은 「산업기술혁신정책에 관한 교시」를 발표하고 이것을 받아들여 1980년에 「스티븐슨 기술혁신법」과 「바이 · 돌법」, 1982년에는 「중소기업기술혁신법」, 1986년에는 「연방기술이전촉진법」등을 책정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Pro-Patent 정책을 폈다. 이로 인하여 미국은 다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고, 그러한 국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국가 경쟁력을 가진 "강한 미국"을 일으켜 세운 밑거름이 되었다.

일본도 2차대전에서 폐전을 한 후 황폐하게 된 나라를 再建하기 위하여 기술선진국으로부터 기본기술(기본특허)을 도입하여, 그 기술을 개량하여 상품화(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고도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노력에 의하여 「경쟁력이 있는 상품 만들기」로 이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국내 인건비 상승과 물가상승, 생산기술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일본국내의 생산거점을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으로 이전하면서, 일본국내는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급격한 기술발달로 인하여 제품의 라이프사이클도 짧아졌다. 그리하여 일본의 산업을 지탱하던 기존의 제품만으로는 경제대국으로서의 자리를 지속시키지 못하게 되었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일어나는 버블현상마저도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일본정부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처방을 써보았으

1) 2003년 8월 30일 국회의원연구단체 국제지식경제포럼 주최 『국가전략과 CEO』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발표한 논문임.

나, 경제는 바닥을 벗어날 수가 없자 정부는 內閣總理大臣을 비롯한 관방장관, 法務大臣, 정보통신기술大臣, 문부과학大臣, 경제산업大臣 등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지식재산전략회의」를 설치하고 지식재산입국의 실현을 위하여 종합적 정책인「知的財産戰略大綱」을 2002년 7월 3일 결정하고 "나라의 再生"을 위하여 동년 5월에는「知的財産立國」을 선언하고, 2002년 11월 27일「지식재산기본법」도 제정하고 관련법규인 특허법, 상표법, 대학 등에서의 기술에 관한 연구성과의 민간사업자에게 이전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력 강화법 등의 제·개정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 경제발전을 위해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어프로치는 미국과 같이「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상품」을 만들어 팔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무형의 재산)을 수출하여,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고자「지식재산입국[2]」을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2.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지적연구활동의 소산을 하나의 재산적 가치를 갖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권리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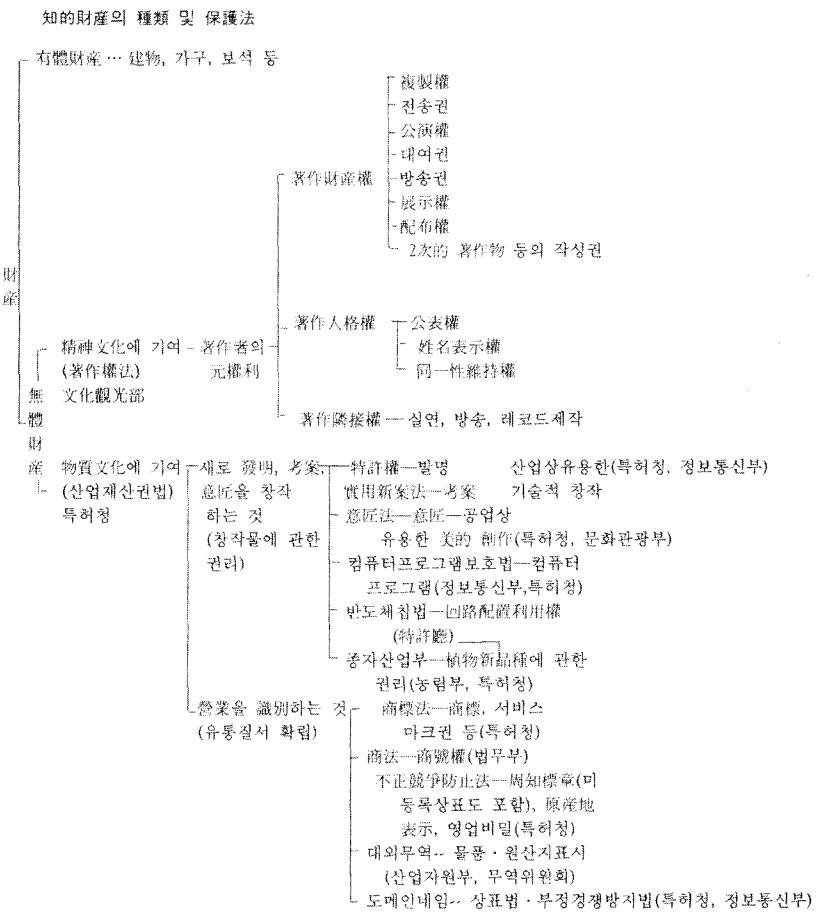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5정판, 2003, P. 3)

2) 「지식재산입국」이란 발명·창작을 존중한다는 나라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물건 만들기에 더하여 기술, 디자인, 브랜드와 음악·영화 등의 콘텐츠라는 가치있는「정보만들기」, 즉 무형자산의 창조를 산업의 기반에 두는 것에 의하여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재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비젼으로 보강한 국가전략이다. 그 실현에는 물건 만들기 기반의 재구축과 병행하여 경제활동의 글로벌화와 정보화의 발전, 고용의 유동화 등에 대응하여 정부, 대학, 기업, 개인 등 모든 레벨에서의 지적창조활동을 자극함과 동시에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발명과 저작물 등의 성과를 지식재산으로서 적절하게 보호하고, 제품·서비스의 부가가치 원천으로서 유효하게 활용하는 경제·사회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일본지식재산전략 대강에서)

그러나, 첨단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경제활동의 다양화로 기존의 지식재산권 법규로는 보호되지 못하는 새로운 범주의 지식재산이 등장되고 있다. 이에 새로운 범주의 지식재산과 그 보호법 및 기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생명공학	- 종자산업법(농림부, 특허청※)
창작성이 없는 D/B	- 저작권법(문화관광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정보통신부)
인공지능	- 특허법(특허청, 정보통신부※)
멀티미디어	- 특허법(특허청, 정보통신부※)
캐릭터	-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이하 부경법)
타이프페이스	- 의장법, 저작권법(특허청, 문화관광부)
아이콘	- 의장법, 저작권법(특허청, 문화관광부)
냄새상표, 소리상표	- 상표법(특허청※)
Trade Dress	- 특허청(상표법※, 부경법※)
Dead Copy	- 특허청(의장법, 부경법※)
프랜차이즈	- 특허법, 상표법, 상법 등 (특허청※, 법무부※, 공정위※등)

지식재산분쟁해결기관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관이 있다.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에 관한 일반침해사건 (특허법 등의 지식재산, 민법 등	- 일반법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발명진흥법)	- 특허청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반도체집적회로도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특허청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저작권법)	- 문화관광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정보통신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전자거래기본법)	- 산업자원부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 상표법, 부경법)	- 정보통신부, 특허청
대한상사중재원(중재법)	- 산업자원부

이상과 같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보호 관리 및 분쟁해결기구가 존재한다. 이는 새로운 영역으로 그 범주를 확대해 나아가는 지식재산권분야의 특징에서 비롯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새로이 출현하는 지식재산권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이며 통일된 정책이 수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단편적이며 임기응변적인 대응만이 이루어진 현상이라 하겠다. 이에 결과적으로 그 관장부서나 근거법을 달리하는 중복된 기능의 분쟁해결기구나 보호관리기구가 양산됨으로써 보호정책상의 혼선이 빚어지거나 부처별 이기주의에 의하여 보호입법이 지연되기도 한다.

3. 환경변화에 대처

21C는 창의와 개성에 바탕을 둔 지식과 정보가 국가 또는 기업의 경쟁력과 경제성장의 핵심요소가 되는 지식정보화사회로 변화하였다. 그래서 지역주의에서 글로벌화에 따른 국경 없는 경쟁과 산업구조의 지식정보화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도태되고 말 것이다.

21C의 기업형태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의해 기업이 변화한다.

형 태	20C형의 기업		21C형의 기업
상품형태	· 하드웨어주체	→	서비스주체
	· 소매점을 통한 거래	→	인터넷거래확대 및 대형매점 유통
사업형태	· 자기이익추구형	→	Win Win
	· 단독경영	→	연결경영
	· 지역형의 시장	→	글로벌화
	· 종신고용	→	고용유동화
	· 피라밋형 조직	→	소수관리자와 전문가
경쟁력	· 노동집약형	→	지능활용형(무형자산 중시)
	· 설비투자중심	→	마케팅 중심
	· 기능중심	→	브랜드이미지 중심
사회성	· 이윤추구	→	안전성 : 사회공헌
	· 1회성 (한번 사용 후 버림)	→	리사이클 : 환경조화

이상과 같은 기업 활동의 변화로 지식재산에서는 「정보 · 지식의 보호」, 「국제적 통일화 논의에 대응하는 제도 정비」, 「권리행사의 강화」, 「발명의 이용촉진」을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싼 인건비를 배경으로 하여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로 생산거점을 대부분 옮겨 국내 생산의 공동화(空洞化)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그나마 국내에 남아 있는 국내 제조업 분야는 외국인이 그 자리 메우고, 내국인은 3D 직종을 기피하고 서비스업분야만을 찾고 있다. 그러는 사이 기업은 제조업을 따라 연구개발부서도 국내를 떠나 현지화하기 시작하여 연구개발 분야도 멀지 않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하겠다[3]. 물론 우리나라도 국내시장에만 의존할 수 없으므로 거대시장을 무시하고 경쟁력이 없는 국내에서의 제조업만을 고집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서비스업도 공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 수도 있다[4].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세계출원 3~4위 국가로 외형상 그 기술경쟁력을 갖춘 듯 보인다.

그러나 실제 그 등록건수는 30~40위 국가에 불과하다.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여 「기본발명」이 적다는 의미이고, 출원건수는 많은데 등록건수가 적은 것은 기본발명보다는 라이센스계약에서 유리한 입장을 얻기 위한 「방어출원」이 많다는 것이다. 기업은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지적자산)이 없이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비싼 로얄티를 지불하고 기술의 수명이 다할 때마다 새롭게 기술(발명특허)을 도입하거나, 기업경영을 포기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려면 기업의 순이익에서 절반을 R&D(연구개발비)로 재투자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조업에 있어서는 국가가 보호 · 장려하는 동시에 국가와 산업 그리고 학계가 연계되어 소위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사업화함으로써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함께 새로운 기술(발명)을 연구 · 개발하여 사실상 시장을 표준화하는 시점에서 기존의 기술(발명)을 우리보다 기술력이 뒤떨어진 국가로 이전하고, 그 이전비로 다시 새로운 기술에 재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로서는 「로또 복권」, 「경마」, 「경륜」 등의 기금에서 일정비율을 「기술연구비」로 할당하여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행할 수 없는 기본 기술의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국제경쟁력이 있는 제도 구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 일본 같이 「지식재산입국」의 실현을 위해서는 (가칭)「지식재산권기본법」제정과 더불어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

① 연구기관인 대학 및 공적연구기관에서의 연구 성과물을 「발명특허」로 이어지게 하고, 특허를 받은 기술을 다시 사업화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법규의 정비(대학의 TLO)가 필요하고, ② 발명에 대한 신속한 권리부여 제도(〈가칭〉특허심사신

3) 조선일보,2003.8.21. B3면

4) 삼성경제연구소는 20일 『제조업 공동화 가속과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제조업 공동화는 고용 감소⇒이공계 기피⇒신(新)산업기술창출 미흡⇒혁신능력 부족⇒성장잠재력 약화라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 이라며 "하지만 우리업계의 대응이나 조정 노력은 미흡하다" 고 밝혔다(조선일보,2003.8.21. B3면에서 재인용).

속화법)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③ 각 부처별로 나누어진 법제와 중복보호 및 관리 그리고 중복된 연구기관, 분쟁해결기관 등을 「한곳」으로 모아 (가칭)「지식재산부」설치하여 (부처이기주의) 중복투자, 중복연구 그리고 부처 이기주의를 철폐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국제사회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지식재산입국(立國)의 실현

우리 기업들은 기술개발보다는 기술도입을 선호하여 왔다. 이는 기업들이 「연구개발」보다 타기업이 연구개발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술 도입」을 택할 것이다. 물론 기업은 타기업이 연구개발한 발명을 도입함으로써 타사가 연구개발에 투자한 시간과 인력 등의 요소들만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기업들은 당장 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하여 같은 기술(발명)을 국내 기업들끼리 경쟁하듯이 많은 로얄티를 지불하고 도입한다고 하며, 또 이를 제대로 활용도 하기 전에 또 새로운 기술(발명)을 도입함으로써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면 할수록 우리나라의 실시료(로얄티)가 해외의 기업으로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이루지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하청업체로 전락하거나 국제경쟁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식이나 노력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소위 지식재산입법의 실현이 요구된다 하겠다. 즉 지식재산입법의 실현을 위해 개인기업과 국가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입법의 실현을 위하여 먼저 국가는 산업정책상 낡은 기술은 후진국으로 과감히 이전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함께 일정 선진기술에 한하여는 국외생산을 자제하고 일정기간 국내에서의 생산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기술이 발명되면 기술후진국으로의 기술이전을 유도하는 국가정책이나 사업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CEO의 인식을 개인적인 인식문제만으로 이해하지 않고 국가산업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며 보다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공계학생을 비롯한 사회전반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식재산입법의 필요성 내지 당위성을 인식케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식재산입법 실현을 위한 노력은 지식재산의 생산, 권리화, 보호라는 각각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의 생산단계에서 특허정보 등의 지식재산정보를 D/B화 하여 보급하고 그 활용방법을 지도하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특허정보의 조사환경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즉, 적어도 국가의 지원을 받고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대학 등의 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목록 작성 등을 통하여 그 활용을 유도하며, 사회비용적 측면에서도 조사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생산된 연구 성과에 대하여 빠르게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사업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며, 해외에서의 권리취득도 적극 장려 ·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기술유출 등 침해행위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며, 모방품 등의 권리침해품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등을 통하여 피해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6. 지식재산 중시형의 경영추구

지식재산입국의 주역은 기업이다. 정부가 아무리 특허,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에 대해 강력하게 보호하고, 넓게 보호하여도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① 지식재산의 전략적 대응확립

라이센스 수입이나 기업에서 활용할 수 없는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재정비하여 존속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즉 각 기업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포트폴리오로서 일원적(一元的)으로 관리하고, 수익성향상과 사업전략의 시점에서 특허의 「선택과 집중」을 진전시킬 목적으로서 전략적인 프로그램을 책정할 것을 장려한다.

② 기술의 권리화(증권화)

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자산으로서 유효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자금조달 수단으로써 지식재산 그 자체를 투자대상으로 증권화 · 신탁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③ 기업(영업)비밀 보호강화

기업활동에서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한층 더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의 영업비밀이 국내외의 경쟁타사에 유출되는 케이스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손상될 것은 자명한 것이다. 그래서 기업은 보다 더 영업비밀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기업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관리

경영활동에 있어 지식재산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기업으로서는 그 이미지의 실추 등 여러 손해를 경험할 수 있다. 이에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업은 지식재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기술 경쟁력의 확보 ·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경쟁사의 기술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하겠다.

⑤ 라이센스계약의 보호

⑥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의 보호강화

글로벌화된 시장과 경쟁체제 내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국내 문제에 한정될 수 없으며, 해외에서의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선출원여부에 대한 조사와 같이 보다 신속한 대응으로 개발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모방 · 침해품에 대처 역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보호 미흡을 이유로 한 통상압력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 있는 것이며, 또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 하겠다.

⑦ 산 · 학 공동연구

⑧ 기업에서 지재전문 인력확보

기업으로서는 지식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 · 확보함으로써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현상들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거나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그 협상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⑨ 해외 최신정보 신속한 파악체제 구축

지식재산권 관리는 단순히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것임을 확인하고, 해외주재관 등을 활용하여 해외 최신정보를 신속하게 파악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기업과 관리정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7. 정부의 지식재산권 정책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가 「국제경쟁력 있는 지식재산권 제도구축」, 「지식재산입국의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에 산재한 지식재산권정책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 보호부서의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정책을 중복보호 및 관리를 피할 수 없다. 또 지식재산정책의 획일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식재산의 전문 학자 · 실무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을 대통령 직속 (가칭)지식재산권 위원회에 상근 또는 비상근하게 하여 산재된 지식재산권 분야의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8. 끝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갈 방향은

첫째, 기술개발을 통하여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거점화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하고,

둘째, 21C에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고비용 구조의 기업을 줄이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늘린다.

셋째, 국내외의 자본과 고급기술 두뇌를 국내기업의 연구기관에 유치하고,

넷째, 고부가 가치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세제 등의 특혜를 주며, 필요한 이공계 인력에 대해 고용기회를 확대한다.

다섯째, 21C의 새로운 기술 연구개발에 의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을 새로운 기술 경제권으로 형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발특2004/4

제10회 여성발명 우수사례발표회 개최

제10회 여성발명 우수사례발표회가 5월 4일(화) 오후 2시에 COEX 태평양관 3, 4실에서 개최된다.

특허청 주최, (사)한국여성발명협회 주관, 여성부,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변리사회,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후원으로 마련하게 될 이번 행사는, 여성발명인의 성공사례 발표기회를 부여하고, 여성발명인의 발명의욕을 고취하는데 있다.

발표자에게는 특허청장 상장 및 상패를 수여하며, 발표자 신청접수기간은 4월 2일(금)까지이다.

※ 문의처 : 02) 538 - 2710